

의 안 번 호	제14호
회 의 연 월 일	2023. 2. 20. (제509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23. 2. 20.

범죄예방정책과장, 범죄예방운영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조직 신고 및 대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안 2조부터 제5조까지)

- 1) 활동시 성별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지역 여건, 치안 상황 등에 따라 조직을 남·여·혼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2) 대원의 자격은 위촉 당시 해당 읍·면·동에 주소·거소·사업장이 있는 주민으로 하고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중복 위촉될 수 없도록 함
- 3) 조직 정원은 10명 ~ 70명으로 하며, 자율방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함
- 4) 자율방범대에 정관 변경, 조직변경, 대장의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하는 총회를 두도록 하고 대장, 부대장 등 구성원의 역할과 임기를 규정함

나. 자율방범대의 신고 등(안 제6조)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조직신고서에 정관, 운영 현황, 대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안 제7조부터 제10조)

- 1) 자율방범대장이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함
- 2)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당 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원이 법·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해촉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3)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의해촉 사유인 ‘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에 대해 세분화하여 규정

라.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안 제11조부터 제14조)

- 1)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을 정하고 경찰서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순찰 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의 장비를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
- 2)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광도를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로 정함
- 3) 복장, 차량, 장비의 규격·색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마.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5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자율방범활동, 복장·장비·차량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해 자율방범대원을 지도·감독하며,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17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실시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형사법 등 관계 법령, 재난대응 요령 등으로 하고, 교육 시간은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직무교육 연 12시간 이상으로 함

사. 중앙회등의 조직 구성, 신고, 업무 등(안 제18조부터 제23조)

- 1)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별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 2) 중앙회등을 조직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조직신고서에 정관, 운영현황, 대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등은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 3) 중앙회등의 업무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 대원에 대한 상담·교육·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직별로 회장·대장, 부회장·부대장, 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함

- 4) 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복장·장비·차량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해 중앙회 등을 지도·감독하며,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중

라. 기 타 : 없 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 여건과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하거나, 혼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의 명칭을 붙여 “OO 읍·면·동 자율방범대”로 한다.

③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단위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 위촉 당시 해당 읍·면·동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제4조(자율방범대의 정원 등) ① 자율방범대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자율방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해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장,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총무는 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대장,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무를 지정한 대장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⑦ 자율방범대는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⑧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⑨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등의 조직변경

3. 대장·부대장의 선출 및 해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방범대의 신고) ① 법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방범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와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설립일은 제3항에 따른 신고증 발급일로 본다.

⑤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후 대표자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와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변경(해산)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①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

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의 지위는 제2항에 따른 위촉장 발급일로부터 인정된다.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전에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사유) ① 법 제6조제3항의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및 진행 상황, 사건·사고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 경찰의 직무상 비밀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3항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행하기로 예정된 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태만히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이 탈퇴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탈퇴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확인 후 탈퇴 처리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다음 날에 탈퇴한 것으로 본

다.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은 별표와 같다.

② 복장의 착용 기간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장의 착용·규격·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후 자율방범대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3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자율방범대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율방범대 차량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청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차량의 경광등이나 그 밖의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법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의 금지의무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질서 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경찰청장등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4호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의 관리)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실적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활동실적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등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제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 관계 법령
3. 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4. 범인 발견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가출인 및 주취자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7.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8. 인권의 개념·법령·제도·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 및 훈련은 신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연중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훈련의 시간은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직무교육 연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군·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합회와 연합대는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연합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회는 각 연합회의 회원 2명씩, 연합회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 내 각 연합대의 대원 2명씩, 연합대는 해당 시·군·구 행정구역 내 각 자율방범대의 대원 2명씩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각 연합회·연합대·자율방법대의 구성원 중 3명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앙회에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을 두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합대에 연합대장 1명, 연합대 부대장 4명 이내,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연합대장, 연합대 부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회등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연합대장 및 부회장, 연합대 부대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무총장 등을 임명한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장 및 연합대장은 중앙회등을 대표하고, 제10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중앙회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은 회장 및 연합대장을 보좌하고, 회장 및 연합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및

연합대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⑨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은 회장 및 연합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⑩ 중앙회등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⑪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등의 회장·연합대장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중앙회등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연합대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중앙회등의 설립·변경·해산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

양회등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후 중앙회를 설립하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를 설립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1부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신고서를 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앙회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등의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신고서와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변경(해산)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등의 설립일은 제3항에 따른 신고증 발급일로 본다.

⑤ 회장 및 연합대장은 중앙회등이 조직된 후 대표자의 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와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변경(해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변경(해산)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회등의 업무) 중앙회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율방범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경진대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감독한다.

1. 법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의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의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회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활동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5호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의 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활동실적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활동실적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경찰청장등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관련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기존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 제복	☐ 활동복 ☐ 방한복 ☐ 정복
2. 모자	☐ 활동모 ☐ 방한모 ☐ 정모
3. 부착물	☐ 직위표장 ☐ 모자표장[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등),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 지휘장(정복) ☐ 소매표장 ☐ 배지 ☐ 직위표 ☐ 가슴표장
4. 부속물	☐ 셔츠·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 금장단추(정복) ☐ 허리띠 및 버클 ☐ 이름표 ☐ 등판표시 ☐ 깃표장
5. 신발	☐ 활동화 ☐ 방한화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인적사항)	주소		
신고내용	자율방범대 명칭	목적	
	활동구역		
	초소 소재지(방범대 위치)		
	초소 전화번호		
	총 대원		
	시설·장비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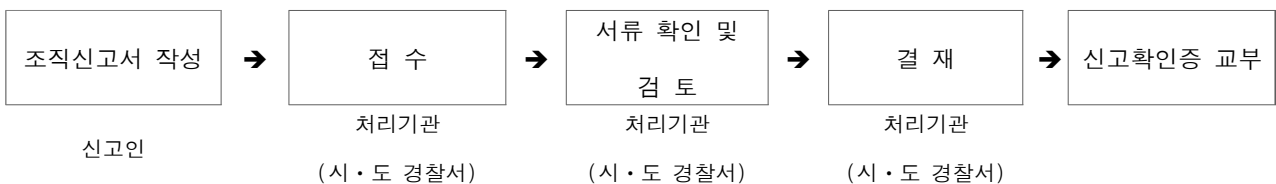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율방범대 정관 1부 2.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3.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기초 현황						
① 방법대명(대표자명)	방 범 대 명: 대 표 자 명 :					
② 대원수		순찰횟수	주 회(요일)			
③ 대원현황(단위 : 명)						
구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2. 장비 보유 현황						
① 방법초소 설치현황						
위 치						
구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적(㎡)	설치제원	비고	
초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② 장비 보유 내역						
구분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순찰 차량		비고
				차종	대수	
수량						

○○○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illegible]210mm × 297mm [백상지 80g/ m²]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집 주소,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 동의 여부	실명, 신청내용 확인 및 자율방범대 운영 사무	자율방범대원 해촉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연번	성명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비고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 ○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210mm×297mm[백상지 80g/㎡]

자율방범대 신고대장

[illegible]

자율방범대 조직·변경(해산)신고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자율방범대 명칭		활동 구역
초소 소재지		초소 전화번호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할 경찰서장



OO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방범대 명칭				
	초소 위치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경찰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율방범대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 검토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 결재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 대장 기록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자율방법대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장명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요 경력	연 월 일	경력 내용
자율방법대	추천 자율방법대	
	추천 사유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자율 방법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할 경찰서장 귀하

작성방법

"주요 경력"란에는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00호

위 축 장

00 자율방범대

0 0 0

귀하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00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00 경찰서장

해촉 요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해촉요청 사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자율방범대원 해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00 경찰서장 귀하			

의견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소속	직위	
	주소		
해촉 사유			
의견 내용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 경찰서장 귀하

해 촉 통 지 서

00 자율방범대

0 0 0

귀하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00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합니다.

년 월 일

00 경찰서장

탈 퇴 서

00 자율방범대

0 0 0

본인은 00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을 탈
퇴합니다.

년 월 일

00 경찰서장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

[illegible]

신 분 증

(앞 면)

(뒷 면)

자율방법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표식) ○○ 자율방법대	발급번호 소속 : 직위 : 성명 : 발급년월일 00 경찰서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	---

구분	내 용
재질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로 한다.
제작 양식	-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mm × 세로 85.6mm로 한다. -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자율방법대 표지(가로 35mm × 세로 20mm)를 인쇄한다. -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30mm×세로 40mm로 한다.
관리	-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동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자율방법대원이 탈퇴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직위란은 대장·지역대장·부대장·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자율방범대원 경력(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속	직위	비고
	부터	까지			

재직기간	년 월	용도	
------	-----	----	--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자율방범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 사항	명칭		
	목적		
	활동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총 회원		
	시설·장비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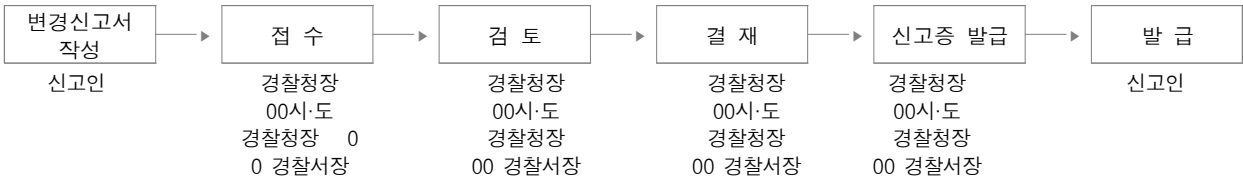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00시·도 경찰청장
00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 운영현황 1부	
	3. 임원 명단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처리절차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1. 기초 현황

① 조직명	조직명: 대표자명:				
② 회원수					
③ 회원명단					
조직명	대표자	회원수	임원수	주소	연락처

2. 장비 보유 현황

① 사무실 설치현황

위 치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적(㎡)	설치제원	비고
사무실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② 장비 보유 내역

구분	순찰번호	손전등	경적	순찰 차량		비고
				차종	대수	
수량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illegible]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조직·변경(해산)신고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명칭		활동 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의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
(00 시·도 경찰청장,
00 경찰서장)

직인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 ([]대표자 []명칭 []사무실 위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명칭		
	사무실 위치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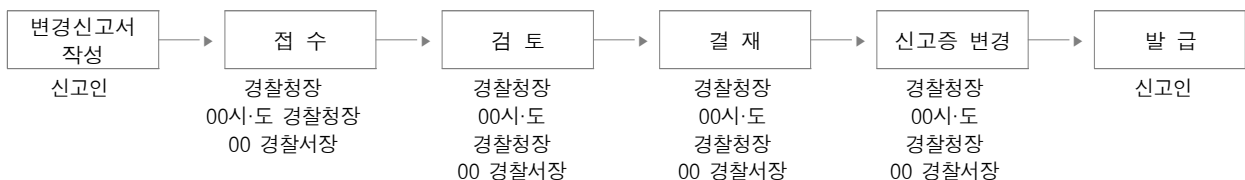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00시·도 경찰청장
00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앙회(00연합회, 00연합대) 신고증 2. 대표자, 명칭, 사무실위치의 변경의결서 3.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뒤쪽)

<변경사항>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31